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-9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0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관계 법령인 「건설기술 관리법」이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와 중복되는 내용(수탁기관 선정방법, 수탁기관 선정기준, 협약 체결 등)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관계 법령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개정사항 반영

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와 중복된 내용 삭제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건설기술 진흥법」

2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1. 7. 15. ~ 8. 4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없음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5) 제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(2021.08.24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·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감독업무”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.
2. “감독위탁공사”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5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사 중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감독위탁공사의 감독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업무의 위탁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감독위탁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에 대한 감독(감리)업무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소규모공사”란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2조제1항에 따른 200억원 미만 공사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.</li> <li>2. “감독업무”란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8조의4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</li> </o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 <u>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</u>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<u>산하기관 등</u>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감독업무”란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.</li> <li>2. “감독위탁공사”란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5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사 중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.</li> </ol>

관한 업무와 영 제105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.

3. “주요시설물공사”란 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.

4. “조경공사”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·인조목·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·그늘막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.

5. “기계설비공사”란 건축물·플랜트 및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·위생·냉난방·공기조화·기계기구·배관설비 등을 조립·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.

6. “치수공사”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업무의 위탁)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시설관리공단, 다른 행정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구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치한 공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주요시설물공사
2. 조경공사
3. 기계설비공사
4. 치수공사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장비·시설 및 기술수준
2. 재정적인 부담능력
3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

제3조(적용범위) 감독위탁공사의 감독업무 -----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----- .

제4조(업무의 위탁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감독위탁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<삭 제>

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 
실적 등

제6조(수탁기관 선정) ①수탁기  
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  
로 한다.

②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  
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 
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  
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 
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구  
모공사 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 
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에서  
제5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  
도록 한다.

제7조(적격자 심의위원회) ①위  
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 
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  
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 
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 
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  
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 
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  
동 해산한다.

②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 
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 
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 
수 없으며, 위원장은 본인 또는  
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

<삭 제>

<삭 제>



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도로계획팀장으로 하고, 위원회의 모든 사무와 회의록의 작성 및 정리·보관을 관장하도록 한다.

#### 제8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

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.

#### <삭 제>

제9조(협약체결 등) ①구청장은

<삭 제>

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 
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  
·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
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해야  
한다.

1.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기간
3.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
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  
항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 
고 인정하는 사항

②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  
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  
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 
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 
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  
여야 한다.

제10조(운영지원) 구청장은 수탁

<삭 제>

기관이 구 예산사업의 소규모공  
사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 
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  
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비용 징수 등) 구청장은

<삭 제>

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  
공자가 수탁자의 공사자재 등에  
대하여 품질검사 등 지시·감독

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
수탁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행하  
게 할 수 있고, 수탁자로 하여  
금 시공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 
징수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수탁기관의 의무) ①수탁

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 
사무의 지연처리·불필요한 서  
류의 요구·불공정한 사무처리  
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 
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수탁기관은 위탁시설·장비  
·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  
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 
다.

③수탁기관은 관계법령, 이 조  
례 및 위·수탁협약사항을 준수  
하여야 하며, 구청장의 명령이  
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  
여야 한다.

제13조(지도·감독) ①구청장은

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 
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  
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 
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, 시  
설 등을 조사 및 검사 할 수 있  
다.

<삭 제>

<삭 제>

②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·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등을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4조(사무편람)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과정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5조(위탁의 취소 등)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2.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
3.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

<삭 제>

<삭 제>

②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6조(보칙)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및 구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개정에 따른 사항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내 중복내용 삭제 등 정비하는 것으로, 그 의안의 시행에 비용발생 또는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음

4. 작성자 : 교통건설국 도로과 김대욱 (☎ 3153-9752)